



세회당 미래도시·열풍북구

###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, 농업용 비닐하우스 관련 유의사항 안내

“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”는 절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

#### 1. 농막

- 주거 목적의 설비시설을 설치
- 음식점, 휴게점 등 영업행위
- 물류창고로 이용

#### 3)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영농행위 외 목적으로 사용



###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

#### 1) 농지(논·밭·과수원), 산림(임야) 휘손

- 공사용 컨테이너, 자재 등 각종 물건 적치
- 주차장으로 사용
- 임야를 농지로 사용
- 나무를 벌목

#### 2) 농사를 창고를 다른 용도로 이용

- 주거 목적의 설비시설을 설치
- 음식점, 휴게점 등 영업행위
- 물류창고로 이용

####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

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,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.

-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
- 토지의 형질변경
- 죽목의 벌채
- 물건의 적치
- 공작물의 설치
- 토지의 분할

#### 불법행위 시 처벌

- ①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
- ②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2회 번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
- ③ 상습·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(송치) 되며,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

#### 한국으로 보는

#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

| 송정 박성진 호수공원

울산광역시북구  
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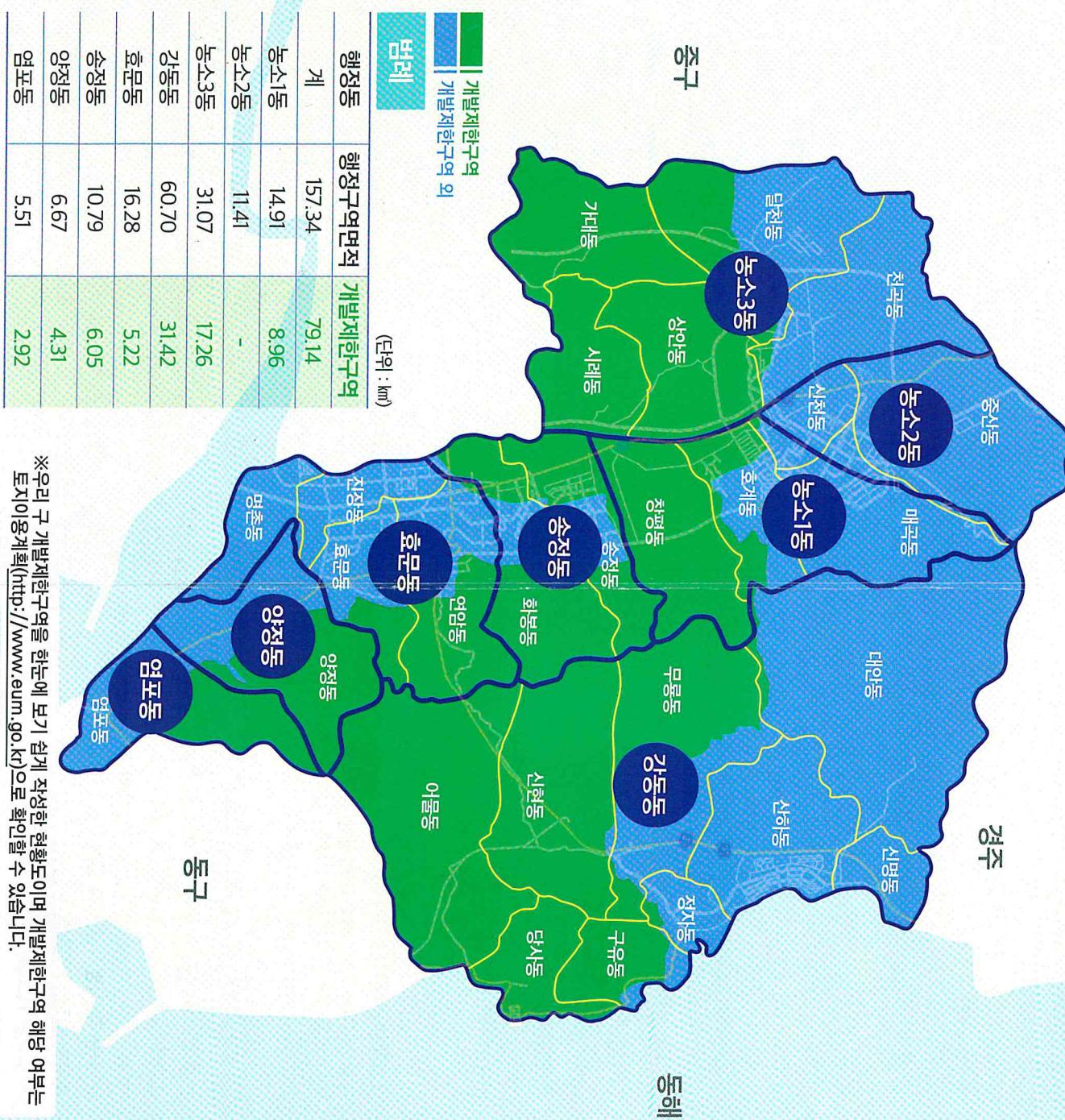
우리 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로 문의하세요



북구청 도시과

052) 241-7903~7904

#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현황도



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

- ▣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·밭을 갈거나 50㎠ 이하로 절토 (1년 단위)
- ▣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㎜ 미만으로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(1년 단위)
- ▣ 채소·연초·버섯의 재배와 윤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
- ▣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타리를 설치하는 행위
- ▣ 10㎡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(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) 설치
- ▣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
- ▣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밭, 고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을 설치(그늘막 등의 공작물 설치는 아니 됨)

## 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

- ▣ 축사, 양이장, 사육장, 작물재배사, 육묘장, 온실 등
- ▣ 창고, 관리용건축물, 농막 등
- ▣ 주민 공동이용시설(마을진입로, 공동주차장, 공동작업장, 경로당, 복지회관 등)

## ② 주택 신축

- ▣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“내”인 토지
- ▣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(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)이 있는 토지

- ## ③ 토지의 형질변경(건축물 제외) 및 토지의 분할
- ▣ 논을 밭으로, 논이나 밭을 고수원으로 변경
  - ▣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·밭·고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
  - ▣ 지반의 통과 또는 제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·옹벽·사방시설 등의 설치
  - ▣ 죽목의 벌弛(나무를 베는 행위)
  - ▣ 토지의 분할(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㎡ 이상)